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
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적용시한 만료(1991. 12. 31)에 따른 시한연장임.

○ 목 적 : 무적차량 방지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

나. 주요골자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허세
면제

○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록시 등록세 경감 : 1000분의 50 ⇒ 1000분의 1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법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 있으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개정하는 것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적차량 방지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